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더불어 사회복지 인권실천 나누기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경기복지재단 대회의실(9층)

주최: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 더용서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 목차

제 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개요	4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소개	6
기조발제 “사회복지와 인권, 가깝고도 먼 사이에 관한 소고” -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11
인권실천 사례발표	
1)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례 - 이인숙(안산평화의 집)	33
2)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례 - 오유정 (목감종합사회복지관)	36
인권항목 사례발표	
1) 자기결정 - 홍순애(에바다마을)	41
2) 정보접근 - 김성림(서호노인복지관)	45
3) 사생활보장 - 신승희(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48
4) 안전과 편의증진 - 김영휴(구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51
분임토의	57
참고자료	
-세계인권선언문	71
-사회복지사윤리강령	75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79

## 제 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 “사회복지 인권실천 더하기, 나누기 +÷”

최근 사회복지실천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 현장이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가들이 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실천 활동을 모색하기에 그 구체적인 가치와 방법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지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인권실천사례 열린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 □ 개 요

- 일 시 : '2013. 11. 21(목) 14:00 ~ 17:0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대회의실 9층
- 참여대상 : 경기지역 사회복지실천가 50여명
- 주요내용
  - 사회복지 인권실천 패러다임
  - 사회복지기관별 인권실천사례발표
  - 분야별 인권실천사례발표
- 주제 강연자 및 토론자
  - 1) 사 회 : 선지영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2) 기조강연 : 육성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사회복지와 인권, 가깝고도 먼 사이에 관한 소고”
  - 3) 주제발표
    - (1) 기관별 인권실천 사례발표
      - 발표기관
        - 생활시설 : 안산평화의집
        - 이용기관 : 목감종합사회복지관
      - (2) 영역별 인권실천 사례발표
        - 자기결정 : 에바다 마을
        - 사생활보장 :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 정보접근 : 서호노인복지관
        - 안전과 편의증진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4) 분임토의
  - 5) 분임토의 발표 및 총평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3:30	14:00	30	○ 등록 및 접수	
14:00	14:05	5	○ 개회 및 인사말씀	
14:05	14:45	50	○ 기조강연	
14:45	15:00	10	○ 휴식	
15:00	15:15	20	○ 주제발표1 : 기관별 사례발표	
15:15	15:55	40	○ 주제발표2 : 분야별 사례발표	
15:55	16:25	30	○ 분임토의	
16:25	16:55	20	○ 분임토의 결과발표 및 총평	
16:55	17:00	5	○ 질의응답 및 폐회	

□ 주 최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구리장애인종합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아람채노인복지관, 안산평화의집,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에바다마을, 경기복지시민연대)

##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기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가졌던 권위와 체계를 벗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인권을 바탕으로 더욱 사회복지실천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적 문제를 대중에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 영화라는 문화적 매개를 통해 폐쇄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가장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사회복지계에는 일련의 변화가 온 듯 보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인권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했음을 반증합니다.

인간의 사적인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흐름은 당연하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굳건한 신념체계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인권적 가치를 사회복지실천에 그대로 녹여내기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변화된 정책은 아직 실천현장의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는 사회복지현장의 실천주체들이 만나는 모임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차원의 연대이자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실천가들의 연대이기도 합니다. 실천주체들의 모임이기에, 우리는 현장에서 인권적 실천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인권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을 새로이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012년 네트워크 발족 이후 다양한 교육, 연구 활동과 정보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실천 방안을 모색해가는 발전적 모임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정책적 환경변화는 외부조건을 형성하는 의미만 있을 뿐, 내부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변화는 내부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실천가들이야말로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이 살아 숨 쉬게 만들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현장. 그 현장이 사회복지의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직접 사회복지와 인권을 통합하려는 실천적 노력을 시도한다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도전과 노력을 스스로 응원합니다.

인권이 밥 먹여주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아직 반문하곤 합니다. ‘인권, 좋지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쓰일 수나 있나요?’라고 말합니다. 애매한 이 말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은 당위적이고 피상적인 개념이자 법률용어로서 존재하기 쉽습니다.

또한 인권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오해를 자주 사게 됩니다. 오해는 반감을 만들고 인권실천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동합니다.

-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인권의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회복지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인권침해를 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와 시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하는 것 같다.

-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권보장 사이의 딜레마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을 계속 먹으려는 지적장애인 A씨에게 사탕을 계속 주란 말이나? 현실을 잘 모르고 인권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무한정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복지실천은 엉망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실천가들도 사람이고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데 왜 이용자의 인권만 강조하는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권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오해들을 해소하려면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권은 단순히 그간 일부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효약이 아닙니다. 또한 인권은 ‘100개의 사례가 100개의 인권’이라는 말처럼 절대적 실천방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이용자, 실천가, 기관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강자로부터 약자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뿐입니다.

인권을 학습하고 이해한다면,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인권은 더 이상 귀찮은 하나의 수행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충돌을 해소하는 주요한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실천의 해법을 찾지 못할 때, 인권은 사회복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와 같은 지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이 지닐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인권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며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정말 밥 먹여준다’는 것을.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더불어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기조발제 “사회복지와 인권, 가깝고도 먼 사이에 관한 소고”

- 육성철(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사회복지와 인권, 가깝고도 먼 사이에 관한 소고<sup>1)</sup>

육 성 철<sup>2)</sup>

## 1. 들어가기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출발은 사뭇 다르다. 사회복지가 자본주의가 태생한 한계를 메우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나타났다면 인권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형성된 천부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적 인권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이전이라 해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인권의 개념은 자유권-사회권-연대권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세 가지 영역이 중첩돼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유권의 후퇴가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권위주의 정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으나 찬찬히 뜯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권적 토양이 척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인권이 법이나 제도로만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권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무수히 발견된다.

인권의 발전 모형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이 조우하는 단계를 짐작해보면 ‘사회권’의 태동일 듯하다. 자유권이 국가가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권리인 반면, 사회권은 국가를 상대로 요구해야 할 적극적 권리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지향점과 맞물린다. 샌드라 프레드먼의 <인권의 대전환>에 대한 조호제의 서문은 이에 대한 논의를 한껏 확장한다. 저자와 옮긴이의 주장을 따르자면 사회권 보장의 전제조건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치밀한 동행이다.

*“우선 국가는 현재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는 권리 실현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차별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sup>3)</sup>*

한국 사회복지의 민낯은 시설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상당 부분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와 민간으로 떠넘긴 정책에 기인한다.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권리의 실체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라는 벽 앞에서 추상적 권리로 배제된다. 인권의 이름으로 복지에 접근하자는 주장 자체가 비현실적 문제제기로 취급받는 일도 허다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인권존중’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것도 사회적 비극이 연이어 벌어진 직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인권은 사회복지와 만나지 못한 채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필자는 아래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소소한 차이는 있겠으나 우

1) 이 글은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열린 워크숍(2013. 11. 21.)의 발제문임.

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으로 12년째 밥벌이를 하고 있음.

3) 위 책 44쪽에서 발췌

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을 듯하다. 적시한 사례는 일부 시설의 특정한 문제에 국한함을 밝혀둔다.

## 2. A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사회복지법인 ○○ 소속기관인 ○○○○학교 및 ○○○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으며, 광주광역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2006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국립 서울농학교 등 3개 기관을 방문하고, 2회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조사대상자 42명 전원을 2박 3일간 기존 생활시설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분리 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 위원회 조사관, 외부 전문가, 보조 인력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레크리에이션팀, 심리치료팀, 동영상팀, 그룹홈팀 등을 별도 운영하고, 수화통역자, 농수화통역사 16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인권위가 인정한 주요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 가. 안마 강요 등 성희롱 등<sup>4)</sup>

다수의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안마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 안마의 경우 친근함의 표시로 볼 수도 있으나,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교사가 생활인에게 안마를 가르치고 다수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안마를 요구한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생활인에게 안마를 요구할 경우 해당 생활인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는 「형법」 제 324조의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 나. 장애인에 대한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sup>5)</sup>

피조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괴롭힘 행위를 부인하나, 다수 생활인들이 구체적인 폭행 장면이 그려진 카드 및 관련된 교사들의 사진을 지목하거나 일부 구체적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의 폭행 관련 진술, 참고인들이 ○○○ 내에서 폭력이 상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장애인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위반이며, 나아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4)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반복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

5) 위 4)와 같음.

#### 다. 기본적 권리의 침해 여부

1) 외출 제한 관련 : 생활인과 종사자들의 진술 및 ○○○에서의 분위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은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장애인들의

2) 장애인의 물품구입 제한 관련 : 피조사자 ○○○은 생활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조사자 ○○○은 “개인용품의 경우, 인지능력이 있는 극소수만 직접 돈을 타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인 ○○○은 “생활인들이 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으며, 참고인 ○○○은 “상당수 생활인들이 약간의 훈련과 학습을 통해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3) 장애인의 두발 제한 관련 : 피조사자 ○○○은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생활인의 머리를 짧게 깎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고, 피조사자 ○○○도 “사실상 외부 미용사에게 머리 스타일을 맡겼으며, 이를 싫어하는 생활인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한 참고인 ○○○은 “생활인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다. 여성 생활인들은 짧은 커트 스타일이고, 남성 생활인들은 스포츠 머리로 통일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 라. 알권리 침해 여부

피해자 ○○○은 ○○○ 측으로부터 장애수당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 ○○○은 개인통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조사자 ○○○은 “장애수당에 대해 매달 설명하지 않고 1년에 2회 정도 설명했다.”고 시인했으며, 피조사자 ○○○도 “일부 생활인의 경우 개인통장의 존재 여부를 물렸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 측에서 생활인들에게 장애수당이나 개인 후원금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 마.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피조사자 ○○○은 ○○○ 측탁의 업무를 맡아 1주일에 1~2회 ○○○을 방문하여 약 30분가량 머무는 동안 전체 생활인들을 살펴보고 생활인과 직접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주로 생활재활교사나 간호사의 의견을 들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정확한 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화통역사가 배석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 생활인의 경우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큰 혹이 머리 뒷부분에 돌출돼 있음에도, 측탁의는 이를 본 적이 없고, 간호사나 생활재활교사 진료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은 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조사자 ○○○은 “눈이 보이지 않는 수준의 생활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피조사자 ○○○도 “○○○생활인들의 경우, 치과, 안과, 간질, 만성적 질환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 바. ○○○○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 1)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여부 등

○○○○ 및 ○○○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 피조사자 ○○○의 진술을 살펴볼 때 ○○○

○ 측은 이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파악했고, 피조사자 이미지는 “사회복지법인 ○○○ 상임이사가 ‘폭력’을 ‘일탈’로 수정하라고 지시해서 고쳤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는 인화학교 측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보이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는 2010년 성폭력 사건 당시 교감이 학부모 대표인 자신에게 단순 폭력 사건처럼 얘기했다고 진술했고, 참고인 ○○○도 대다수 학부모들이 2010년 성폭력 사건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강제성이 동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 측이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한 점, 학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가 보건교사에게 문구 수정을 지시한 점, 교감이 학부모에게 단순 폭력 사건처럼 설명한 점, ○○○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 측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개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 2)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침해 여부

가) 교육환경 조성이 적절했는지 여부 : 2005년 ○○○○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4명의 교사가 차례로 학교에 복귀하였으며, 이는 재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일부 학급의 수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성폭력 관련 교사들의 복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부 선생님조차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들은 ○○○○○○를 떠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술했다. 문제 교사들의 복직과 관련하여 일부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 학교 측에 항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성폭력으로 문제가 됐던 교사의 학교 복직은 공립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도 반감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가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부여되어 있어 관할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임면권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제할 방법이 없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 등의 폐쇄와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동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학교 등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데 동 규정에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의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 ○○○○○○ 교사의 수화구사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내용을 개발하거나 회의를 한 적이 없었으며, 학부모들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해 수업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는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용 교재 개발 및 장애인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동 법률 위반이라 판단되므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 사.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의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는 해당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제6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제5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및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은 그 소속기관인 ○○ ○○○, ○○○○○○, ○○○○○○, ○○○○○○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있다. 2006. 8. 21.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에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해임조치하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임원진을 재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관련 임원 해임을 통보하였으나, 이후 ○○의 해임명령 청구소송 및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2006. 9. 29.), 이에 대한 광산구의 항고 소송 진행 중 사회복지법인 ○○은 이사진을 새로이 교체함으로 소의 실효가 없어 각하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의 권고로 이사 및 감사 중 1인이 교체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 12월 이후 2011. 5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지도·감독한 예가 없다.

광주광역시는 해당 법인 이사들을 해임하고 교체하려 노력하였으나 ○○ 법인의 소송 및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로 인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사회복지법인 ○○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횡령 및 성폭력 은폐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연례적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 ○○○에서의 정상적인 교육 운영 등이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해임명령에 있어서도 그 요건이 엄격한데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들의 지도·감독이 교육청,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어 2010년 성폭력 의혹사건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을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아. 광산구의 ○○○○○에 대한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의 적절성 여부

광산구는 매년 ○○○○○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주로 시설 및 회계와 관련 내용이었다. 성폭력과 사건과 관련하여, 광산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4월과 5월에 ○○○○○ 및 ○○○○○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2010. 7. 9. 최초 인지하였으며, 이후 추가 성폭력 피해내용도 인지하고 같은 해 8월 1차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했으나 ○○○○○ 측의 거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1. 4월 2차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했을 때도, ○○○○○ 측이 캠코더 설치 등을 주장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건발생 1년 뒤인 2011. 5. 3.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산구가 매년 ○○○○○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시설 및 회계에 한정되어 있어 지도·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생활인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생활인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0년 이후 광산구가 ○○○○○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 측을 설득하고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광주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으로서 사건발생 1년 뒤인 2011. 5. 3.에서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극적 의무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산구는 향후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자. 폐쇄 후 전원에 의한 임시보호조치

광산구청은 2011. 10. 31. ○○○○○을 시설폐쇄 조치하고 ○○○○○에서 거주하던 생활인 42명을 광주지역 3개 시설로 전원 조치하였다. 이러한 시설폐쇄에 따른 전원조치는 임시보호조치로, 전원된 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전원된 생활인의 대부분은 언어·지적장애인이거나 일부 시설의 경우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광산구는 ○○○○○ 생활인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2011. 10. 31. 약 3시간에 걸쳐 생활인 전원에 대한 기호파악 등을 실시하였다.

광산구의 조치는 생활인들의 의사와 일부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임시보호 중인 생활인들과의 의사소통 및 전원에 따른 적응문제 등 향후 전원 생활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특성을 감안할 때, 광산구가 3시간이라는 시간동안 42명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산구는 시설폐쇄 후 전원조치 된 ○○○○○ 생활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하여 생활인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욕구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차.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가 주로 출결상황, 물품관리 및 예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의와 관련하여서는 행하여지지 않아, 해당학교조차 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 ○○○○○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동 법률 위반이라 판단되며, 이를 시정하고 지도하지 않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의 시급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 경우 2005년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위원회가 2006년 성폭력 혐의자 6명을 검찰 고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

한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광산구청이 2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소극적 대처로 판단되며, 정식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하여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원회의 권고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또 다시 동일학교에서 성폭력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더욱 적극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B 아동 시설의 인권침해

2012. 5.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 조사 도중 ○○영육아원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6)</sup>

조사내용을 토대로 인권위가 인정한 주요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 가. ○○영육아원의 체벌 및 가혹행위 관련

피조사자3(○○○)이 ○○영육아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육아원 아동들에 대해 훈육이란 명목으로 회초리 또는 몽둥이로 직접 체벌하거나 피조사자13(○○○)에게 체벌을 지시한 사실, 욕설을 한 아동들에게 청양고추나 생마늘을 직접 먹이거나 먹이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조사자16(○○○)의 시설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복수의 피조사자는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영육아원 내부자료에서 피조사자○○○이 2010. 1. 피해자22(○○○)의 따귀를 2대 때린 사건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과, 2012년 초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데려가 아동과 합의한 뒤 피조사자 ○○○이 보관 중이던 45cm 몽둥이로 엉덩이를 3-5대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나. ○○영육아원의 아동인권 침해 관련

1) 타임아웃방(독방) 운영 : 비록 타임아웃방 설치 및 운영이 반성과 성찰의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설 내에

6) 본 사건은 현재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시설 측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위 내용은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서 반성과 성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의 연령에 비해 장시간 감금하여 아동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정서적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과 반발을 강화시켜 타임아웃방을 다녀온 직후 가출을 시도한 아동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타임아웃방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명예권 등을 포함한다.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갇혀 반성을 강요당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파생하는 신체 거동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시설아동을 징벌적 성격의 독방에 수용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감시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등 생리적 욕구 해결조차 불편을 겪게 했다면, 이는 신체 거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타임아웃방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설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타임아웃방의 입퇴실을 결정하고, 나아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 시설 아동의 일상적 행동을 제한하는 ○○영육아원의 관행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살펴볼 때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여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수준이고, 아동의 성숙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영육아원의 식사, 외출, 물품 구입, TV 시청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가인 참고인들의 자문을 종합하면 ○○영육아원에서 시행한 통제 위주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에 대해 복장을 규제하고,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고,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식사 시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 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본적 생존권 침해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기본적 생존권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아동이 겨울철에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아동의 건강권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식사시간에 늦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시설 아동의 용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에 배정하는 운영비의 일부로서, 이는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설에서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영육아원 아동들은 시설에서 지급 받은 용돈으로 이발, 생리대 구입, 학용품 구입, 핸드폰 요금, 교회 십일조 등을 충당하는바, 일부 C등급 용돈을 받는 아동의 경우, 용돈이 부족해 절도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영육아원의 아동 간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용돈이 모자라 500원-1,000원을 받고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영육아원 아동의 월별 용돈 지급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A등급이 없는 경우는 있으나 C등급이 없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네거티브 행동 규제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아동의 침구류 가운데 베개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급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그간 ○○영육아원이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필품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의 온수 미공급, 식사 미제공, 용돈 차별, 침구류 미제공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명시된 아동의 복지 및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와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종교의 자유 제한 :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영육아원의 경우 설립자인 피조사자1(○○ ○○○)이 선교사이고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시설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1지속적으로 강요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종교적 취향은 일생을 두고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종교생활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바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한 교회에 다녀야 하고 자신의 용돈에서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영육아원 측이 2012년 전후 한 차례 시설 내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아동이 최근까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영육아원 소속 직원이 아닌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는 도중 시설 아동을 집단적으로 체벌하였음에도, ○○영육아원 측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행위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은 시설 아동의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등 침해 :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설 아동의 경우 퇴소 시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 측에서 아동이 자립금을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아동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 ○○○의 경우 사용 용도가 학원비였으므로 당연 지급 대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아동들이 퇴소하기 전에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이며 후원금과 수당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 아동의 경우, 언젠가 시설 밖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시설 책임자는 아동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설 아동에게 있어서 자립지원금과 후원금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시설은 이와 관련한 사전 준비교육과 경험 축적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 아동에게 정확한 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퇴소한 아동이 교육비 명목으로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시설에서 신속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며,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자립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의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내역을 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통장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체험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시설 아동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 제한 : 외부기관의 설문조사 시 시설 아동들이 시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책임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0명 안팎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치회가 없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 등을 개정할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은 ○○영육아원이 아동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함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즉시 개선하지 않았고, 재차 지적을 받은 뒤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고, 그마저도 인권위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시설아동의 진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바, ○○○영육아원의 경우 이러한 절차나 실효적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인권상황의 개선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와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보장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장애아동 보호조치 관련 : 복수 피해자 진술, 피조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장애아동 및 ADHD 아동들은 ○○영육아원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의 특성 상 필요한 시기에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바, ○○영육아원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는 “복지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 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육아원은 장애아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8) ○○시청의 관리감독 책임 :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제1항 제4호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자체가 관할 시설에 대해 개선,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지도점검에서 폭언, 체벌, 폭행,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으나 ○○시청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도점검에서도 타임아웃방(독방)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과정에서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청은 보다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아동위원 선임 등 내부 점검 시스템 마련 등의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자체 단위를 넘어 모범적인 시설운영 사례를 연구하고, 아동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2012. 12. ○○영육아원은 이사회에서 피조사자 ○○○이 퇴직하고 피조사자 ○○○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기관 운영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그간에 위 시설에서 아동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피조사자 ○○○과 피조사자 ○○○은 시설 운영자로서 상당한 책임

이 있으므로, 향후 ○○영육아원 아동들의 인권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 책임 : 「아동복지법」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하듯,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영육아원과 ○○○○아동복지회의 연관성, 피조사자 ○○○의 과거 근무 경력 및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영육아원에 대한 그간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는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 책무를 지닌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교차점검 방식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마무리 : 고단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부치는 글

정확히 13년 전의 일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 또한 사회복지사의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열악한 현장 상황에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서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내 복지를 걱정하는 마당에 남의 복지를 얼마나 잘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자조 속에 사회복지사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아쉽게도 내가 쓴 기획기사는 3-4년에 한 번씩 비슷한 기획으로 여러 매체에 실렸다. 시간이 흘러도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의 질을 높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마치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감정노동자에게 고객을 향해 항상 웃으라고 지시하는 매뉴얼과 닮았다. 사회복지가 인권과 만나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 수급자에서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에서 이용자 관점으로 옮겨가야 할 이유도 여기 있을 듯하다.

#### 붙임 : 월간 <신동아> 2001년 2월호

[동행취재] '절망속 희망찾기' 사회복지사 24시

우리나라에는 현재 6만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으며(협회 추산) 지난해부터는 해마다 1만여 명의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부·복수전공 포함). 전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전공을 살려 사회복지 분야로 직접 진출하는 사람은 10%를 밑돈다.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묵묵히 일궈나가는 사람들의 손길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1월 3일 아침 8시. 서울역 광장에는 찬바람이 가득하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씨지만, 염천

교로 통하는 지하도에는 몇몇 노숙자들이 아침 잠을 청하고 있다.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어쓴 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아마도 점심때나 돼야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날 모양이다.

지하도를 나와 봉래동 쪽으로 걷다 보면 오른쪽에 화신빌딩이 있다. 김유경씨(30)는 이 건물 5층 서울시노숙인대책협의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다. 기자가 김씨를 처음 만난 건 서울역에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진을 쳤던 98년 여름이다. 김씨는 이때부터 낮에는 서울역 광장 테이블에서, 밤에는 서울 시내를 돌며 노숙자들을 만났다. 그로부터 2년. 김씨는 노숙자가 시간대별로 움직이는 경로까지 자세히 꿰고 있다. 얼마 전에는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태도’를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김씨는 아침 일찍부터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연말연시에 모처럼 쉬었더니 몸이 날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서울역을 떠나지 않고 사무실에서 먹고 잤던 터라 모처럼 얻은 휴식이 달콤했던 모양이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과 영화구경을 했다는 말이 이채롭게 느껴진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연이어 울린다. 질문을 던지기가 미안할 정도다. 그는 통화를 끝낼 때마다 끊어진 말들을 천천히 이어갔다.

“한 달 전쯤이었는데, ‘쪽방’에 살던 분이 새벽에 일을 나가다 자동차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희망의 집’에 계시던 노숙자였거든요.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거리에 있는 사람만 노숙자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시설에 수용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죠. 하지만 이젠 언제든지 노숙에 이를 수 있는 한계계층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 경기가 회복돼도 노숙자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쪽방’은 서울 회현동이나 동자동 등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0.3~0.7평 크기의 빈민층 거주지를 부르는 말이다. 전국에 8200여 개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의 58.4%는 이미 노숙 경험이 있다. 이들은 거리를 떠돌다 돈이 조금 생기면 다시 쪽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희망의 집’은 서울시가 노숙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복지관 등에 설치한 보호시설을 말한다. IMF 이후 많은 노숙자들이 이곳을 통해 새출발했지만,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 거리를 떠돌고 있으며 시설 입소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김씨는 “노숙자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날씨가 추운데도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노숙자들의 경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정신질환자, 만성 노숙자, 장애인, 여성 등은 시설 입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이 목격한 어느 여성 노숙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남성 노숙자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여성 노숙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라구요. 여러 명의 남성 노숙자들이 방어벽을 치는 거예요. 이미

그 여성을 중심으로 돈을 주고 관계를 맺는 그룹이 생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성이 입소한다고 해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이에요.”

## 숨 가쁘게 달려온 2년

김씨는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91학번이다. 소비자아동학을 전공한 사람이 뒤늦게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졸업을 앞두고 왠지 기업에 들어가서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원을 거쳐 서울역으로 나오게 됐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의 몸을 굴리면서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공부하는 실무자’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내 체질에 딱 맞아요.”

아무리 일이 좋다지만,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조차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일에 몰두할 때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자정이 넘도록 노숙자를 상담하고 회의를 마치면 새벽이다. 이때부터 상담내용을 정리하면 날이 밝는다.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2년이였다.

지난해 추석 연휴였다. 김씨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할 생각으로 5일 동안 사무실에서 지냈다.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밥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칼로 잘라 해동시켜 고추장에 비벼 먹으며 글을 썼다고 한다. 그렇게 정리한 글들이 파일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그는 오래 전부터 기록하는 데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경험은 전수돼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아마 제가 오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때도 저는 하트드레이닝을 강조해요. 백번을 스치는 사람보다 한 번을 제대로 파고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력을 다해 매달립니다. 얼마 전엔 13시간을 쉬지 않고 교육한 일도 있어요.”

김치찌개로 점심을 때우고 남대문 경찰서 뒤편에 있는 지역상담센터로 갔다. 김씨는 이곳의 도움을 받아 쪽방지역 거주자들의 실태조사를 준비중이다. 조사방법과 일정을 자원봉사자들과 협의한 뒤에 사무실로 돌아온 시간은 3시 10분. 이제부터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회의가 시작된다. 김씨는 회의자료를 챙겨 들고 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진다.

“전 아무래도 필드 체질인가 봐요. 힘들어도 그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김씨와 다시 마주앉은 건 밤 9시가 넘어서다. 얘기를 시작할 만하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온다. 그냥 인사만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법이 없다. 안부를 묻고 새로운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어쩌다 노숙자의 전화를 받으면 몸상태를 체크하고 입소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IMF 직후엔 ‘실직 노숙자’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잠깐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서비스했잖아요. 하지만 요즘 거리를 보면 ‘실직 노숙자’라는 각도에서 보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노숙자를 말할 때는 거리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서비스는 시설에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거리에는 쉼터에서 아무리 손길을 뻗어도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풀어야만 노숙자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 시스템에서는 거리의 노숙자를 그런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7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술을 마시고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해요. 예순살 된 아버지를 구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정신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안 돼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 일을 떠넘기고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노숙자 한 명이 죽어야 서울시장이 겨우 한마디 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노숙자를 중심에 놓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 ‘잠재적 노숙자’는 늘어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거리 노숙자는 2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잠재적 노숙자’ 수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만성 노숙자가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노숙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귀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밤 11시.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야간상담 지역으로 갔다. 김씨는 오늘 시청역을 맡았다. 지하도에서 마주친 노숙자들 중에는 김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다. 김씨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떠올리며 친근하게 다가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조선족 여성의 얘기부터 술냄새를 물씬 풍기는 험상궂은 청년까지... 콘크리트 바닥에 판자를 깔고 누운 그들 곁에서 김씨는 꾸준히 쉼터 입소를 권했다.

11시 30분. 공익요원들이 지하철 역사 안쪽에 누워 있는 노숙자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쉼터를 내릴 시간이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돌아서는 그들에게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다. “여기서 죽지 쉼터엔 안 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꾸 귀찮게 굴지 말고 컵라면 값이라도 달라는 사람. 김씨는 그에게 “돈을 드릴 테니 내일 다시 만나서 따뜻한 방으로 가자”고 말한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손에 돈을 얹어주고 돌아선다. 김씨의 혼잣말이 들린다. ‘내일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2시간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평가회의까지 끝낸 시간은 새벽 2시. 그는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다.

—요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일해보면 차이가 뚜렷해요. 가장 큰 게 사회복지 마인드겠죠. 노숙자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클라이언트의 처지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이 달라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전략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는 기본이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쪽 일을 하다가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복지와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처우나 근로조건이 결정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도 중요해요. 노숙자 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잡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어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는 사회복지사의 영역만 잘 갖추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2시 30분. 김씨는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할 모양”이라며 서류 정리를 시작한다. 벌써 여러 곳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온 탓이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고 답했다. 월급 120만원에 1주일 평균 70시간이 넘는 고단한 생활. 요즘 신세대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김씨의 열정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 사표를 던지는 공무원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 박정희씨가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아이를 낳고 2개월 뒤에 일을 시작했는데 자신이 위암 환자인 것조차 모르고 과로에 시달렸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이 제정된 뒤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렀다.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자산조사를 벌였는데, 한 사람당 400~500가구를 맡은 경우가 허다했다. 1가구 평균 1시간만 잡아도 2개월간 500시간을 현장조사에 매달린 셈이다.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의 격무는 요즘도 여전하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만 무려 30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고(현 4500명) 앞으로도 더 있을 전망이다. 2배로 늘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벌써부터 ‘3D직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다. 정부는 당초 2001년에 700명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일용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직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반발은 거세다.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사무소를 찾았다. 박미진씨(34)는 9년차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발령받은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3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8년이나 계속한 끝에 지난해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과정에 박씨의 공무원 등급은 7급에서 8급으로 낮아졌다. 연봉 1800만원. 그 자신도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단순한 월급쟁이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라고 말한다.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지난 1년은 지옥과도 같았다. 새로 수급권자를 정하고, 지급액을 재조정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원이 쏟아졌다. 기껏 고생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어야 했다.

“국기법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저는 기존 생활보호법보다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IMF 직후엔 보호받을 사람도 아니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걸 바꾸는 과정에 손해를 보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 정해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박씨는 수급권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 ‘국기법의 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융거래 내역만으로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박씨는 현재 173가구를 맡고 있다. 미아리 같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비하면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잡무만 처리해도 하루가 다 간다는 것이다. 신규 수급권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 그쪽을 조사하기도 시간이 빠듯한데 아침부터 민원이 밀려들면 하루종일 화장실도 못 가고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국기법, 장애인,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업무에 행정잡무와 관공서 심부름까지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이다.

무리한 업무량은 후유증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박씨는 3개월 이상 제시간에 퇴근을 못했다. 안양시에서 공무원이 과로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낮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잡는 거예요. ‘명색이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사람이 무식한 어머니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후회를 하면서도 일에 치이다 보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오를 때마다 그는 사회복지사로서 첫발을 내딛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어머니 없이 자란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에게 ‘어머니 없는 자리를 채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었는데, 지금껏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만의 보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이에 최대의 관심사는 신규직원 채용 문제다. 행자부는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용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고,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를 채용해야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에는 이른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규명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잘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담기술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시키는 능력,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받쳐줘야 합니다.”

또한 박씨는 지속성을 강조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일을 시작하지만 부실한 복지체계 때문에 금방 지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이 바닥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다. 박씨는 뒤늦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려는 친구를 간곡히 말렸다고 한다. 맨땅에 헤딩하다가 나가떨어지는 동료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란다.

##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김대열씨(47)는 18년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에서 일하고 있다. 홀트는 국내외 입양을 주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한국에서 입양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세계적으로 ‘유아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한편, 핏줄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 때문에 국내 입양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김과장이 처음 홀트에 몸담은 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 입양자 수는 7000~8000명에 달했다. 그 숫자는 9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0명대로 줄어들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입양은 해외입양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초창기 입양의 상당수가 전쟁고아나 결손가정 아동인 데 비해 최근에는 미혼모 입양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장애아의 경우 국내 입양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입양이 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 아이가 외국으로 가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이 최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과장은 입양의 성패는 사후관리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사후관리를 못 하면 ‘베이비세일’이라는 비판을 받겠지만, 사후관리를 잘 하면 아동복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자신이 직접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일도 있다. 해외 입양 아동의 친부모 만남, 뿌리 찾기, 캠프활동 등이 그것이다.

“사후관리를 통해 해외 입양을 떠난 아이들이 그 사회에서 정체성을 갖게 해줘야 해요. ‘나를 버린 나라’가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 보내준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죠.”

김과장은 해외입양 업무에 종사하다가 89년부터 행정직으로 옮겼다.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김씨 자신은 물론 동료들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사회복지사가 행정을 알면 효율을 몇배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획이나 예산배정 등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과장은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사회복지사는 자기희생과 노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과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아직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으므로 성급하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일하면 클라이언트가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처우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겁니다.”

이것은 김과장이 살아온 뒀안길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농촌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김과장은 검정고시와 야간대학을 거쳐 사회복지사의 길로 들어섰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정신치료사로 일하던 시절 전문적인 서비스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서 홀트에 입사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꼭 맞벌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의욕이 있어도 여건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회복지도 제대로 하려면 계속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 보호가 절실한 장애아동

1월2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의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새해 업무준비가 한창이다. 지민희 씨(34)는 이곳에서 장애아동 보호와 유료헬퍼(전문도우미) 활동을 총괄하는 팀장이다. 지씨는 한신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잠시 무역회사를 다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을 느끼고 장애아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더 늦기 전에 배운 것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지난해 지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유료헬퍼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기존 자원봉사자와 달리 유료 봉사자를 고용해 장애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센터에서 장애인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장애인은 다시 유료 봉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40명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문제점도 나타났다.

“늘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던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도우미의 의욕을 최대한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았거든요.”

유료헬퍼는 외국에서 보편화된 시스템이다. 특히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유료헬퍼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 장애인들은 방안에서 홀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도 실시하고 있다. 서초, 강남 지역 장애아동들이 학교를 마친 뒤 이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프로그램은 노래부르기, 만들기, 이야기하기 등이다.

센터에서는 장애아동 가족들을 상대로 캠프도 자주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다고 한다.

“첫째는 ‘외롭지 않다’는 느낌일 겁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장애아동을 둔 가족끼리 갖는 ‘동류의식’도 큰 효과라고 봐요.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지만, 캠프에서는 서로 감싸줄 수 있잖아요.”

장애아동 가족지원센터에는 하루 평균 10여 명의 장애아동이 찾아온다. 나이는 11세에서 21세까지 다양하고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이다. 이들이 머무르는 놀이방은 10여 평 남짓. 함께 노래부르는 시간을 빼면 어수선했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한 편일 것이다. 아직도 수많은 장애아동들이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 보람을 먹고 산다

신용석씨(29)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다. 그는 대학에서 전자계산을 전공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다시 대학을 다녔다. 부모님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접목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직 얼마 안 됐지만, 참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일단 열심히 뛰기로 했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도 복지관이 많은 지역에 속한다. 그만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김씨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순회상담, 쌀·밀반찬 지원, 빨래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살피고 있다.

“언론에서는 엄청난 세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방세와 가스비를 겨우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지내는 분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시는 분을 볼 때면 답답할 뿐입니다.”

신씨는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한다. 퇴근 시간은 밤 9~10시. 보호대상 가구를 돌며 상담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복지관에서 사회교육 서클을 진행할 때도 있다. 다른 곳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대우는 좋은 편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다. 특히 능력있다고 소문난 선배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바닥을 떠날 때는 더욱 가슴이 아프다.

“사회복지를 너무 좋아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남들보다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생활 3개월. 그가 느끼는 보람도 여느 복지사와 다를 게 없다.

“추운 날 밤에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달동네를 다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잡아끌며 커피 한잔 먹고 가래요. 길모퉁이까지 나와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거예요.”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인권실천사례 발표

- 1) 사회복지 생활시설 사례 - 이인숙(안산평화의 집)
- 2)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례 - 오유정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부문 <안산평화의집>



2013. 3. 5.(전직원대상 인권교육)  
**인권으로 소통(疏通)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인권교육가 현장훈련과정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진행(1회기차 교육)  
 • 강사 : 경주연강사  
 • 내용 : 차별과 차이를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2013. 3. 12.(전직원대상 인권교육)  
**인권으로 소통(疏通)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인권교육가 현장훈련과정으로 전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진행(2회기차 교육)  
 • 강사 : 고은채강사  
 • 내용 : 시설내 인권사례 나눔 및 사회복지에  
 기반한 인권실천

## 사회복지생활시설부문 <안산평화의회>



2013. 3. 6. (이용자 대상)

인권으로 소통(疏通)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인권교육가 현장훈련과정으로 시설이용자 대상으로 인권교육 진행(1회기차 교육)

- 강사 : 김미애강사
- 내용 : 시설이용자 권리 찾기



2013. 3. 11. (이용자 대상)

인권으로 소통(疏通)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인권교육가 현장훈련과정으로 시설이용자 대상으로 인권교육 진행(2회기차 교육)

- 강사 : 이인숙강사
- 내용 : 시설 내 차별사례 나눔, 인권실천 약속문만들기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사회복지생활시설부문 <안산평화의회>



2013. 6. 24. (이용자 대상)

장애인권교육 "알고 보면 쉬워요"

안산시지역복지협의체에서 안산시 장애인 대상으로 진행한 외부 인권교육에 참여함

- 강사 : 박숙경교수
- 내용 : 인권의 이해, 장애인 인권의 이해



이용자참여 확대를 위한 거주이용자 자치회의

-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
- 진행 : 이용자대표 및 총무
- 내용 : 주간 행사 및 프로그램 일정공유, 시설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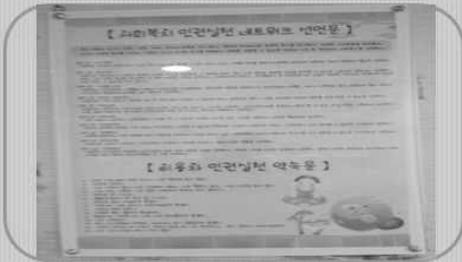
## 사회복지생활시설부문 <안산평화의회집>



2013. 10. 22.

### 안산평화의회집 30주년 기념행사

이용자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과 자기결정, 참여의 기회 확대라고 봄. 이에 시설의 중요한 행사에는 이용자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탕에서 이용자 중심의 시설운영의 근간을 이루려고 노력함



###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 이용자 인권실천 약속문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인권실천 약속문을 각 층 생활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서로에 대하여 약속과 배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사회복지생활시설부문 <안산평화의회집>



###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를 위한 인권에티켓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및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인권 에티켓 교육 실시

- 시설라운딩은 홍보동영상으로 대체
- 라운딩 진행 시 반드시 이용자 사전 동의
- 사진촬영 및 홈페이지 이용자 사진 등 정보공개 시 반드시 사전 동의



###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및 사례회의

분기별 인권 사례회의 진행 및 년 2회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 진행함

- 인권지킴이단 : 총 8명
- 내용: 인권지킴이단 사업계획 및 인권모니터링, 평가 등 실시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인권실천 사례발표

#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오유정 과장

## 사회복지이용시설부문 <목감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2월 25일~28일  
인권을 알자, 느껴자, 체험하자

일신매화지역아동센터 25명의 아동들과 함께 나의 권리와 친구의 권리 찾기, 차이와 차별 구별하기, 인권나무만들기, 인권 캠프(1박2일, 홍천) 등을 진행하여 인권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사회복지이용시설부문 <목감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7월 30일

하계 자원봉사학교 인권교육

인권 교육 후, 각 모듬 별로 인권에서 소외된 그룹을 선택하여 어떤 권리들이 차별받고 있는지 논의하는 인권 실루엣 프로그램을 진행함



2013년 3월 22일

직원 인권교육

매월 인권실천 네트워크에서 다뤄진 인권사례와 이론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복지관의 사례와 접목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사회복지이용시설부문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목감복지관의 사업 모토 : 가서, 여쭙고, 찾아내고, 역어내자 !



2013년 8월 15일

청소년 동아리 임원 회의

복지관 소속 8개 청소년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준비를 위해 각 동아리 회장들이 모여 기획 회의를 함으로써 의견 수렴 및 함께 진행하는 과정을 가짐



2013년 11월 11일

일반찬서비스 이용자 간담회

지역별로 일반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을 가짐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인권실천사례 발표

- 1) 자기결정 - 홍순애(에바다마을)
- 2) 정보접근 - 김성림(서호노인복지관)
- 3) 사생활보장 - 신승희(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 4) 안전과 편의증진 - 김영휴(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야1 <자기결정>**

**자기결정**

**관련조항**

- 1.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 1조. 자기결정  
 이용인은 욕구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용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
- 2. 세계인권선언**  
 - 제29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이 오로지 자유롭고도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의무가 있다.  
 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을 따름이다.

## 분야1 <자기결정>

### 자기결정

#### 관련조항

#### 3.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

#### 4.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1 <자기결정>

### 자기결정

#### 자기결정 인권실천사례

#### 성인이용인의 술 구입

이00씨(40세 남자)는 2012년 본인의 요구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 전원.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동반, 양팔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워 많은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손대신 발가락에 펜을 끼워 그림과 글씨를 써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함.

식사를 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보다 스스로 식사하기를 위해 입에 손가락을 물고 밥과 반찬을 떠놓은 후, 섭취하는 방법으로 식사함.

지체장애로 인해 신체활동은 불편하지만 모든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며 본인의 의사와 욕구, 불만 등을 강하게 표현함.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1 <자기결정>

### 자기결정

#### 자기결정 인권실천사례

##### 성인이용인의 술 구입

이00씨는 간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 매주 1~2회 정도 담당자와 동행하여 마트에서 별도로 개인 간식을 구입하고 있음. 이00씨는 마트에 갈 때 담당자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나가고 싶어 하며 술도 구입하고 싶어 함. 그러나 시설에서 동네마트까지 도보로 왕복 30분 정도 되는 거리이고 자유롭게 못한 양팔로 물건을 구입해서 들고 오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 담당자가 항상 동행하고 있음. 몇 달 전, 외부기관 활동에 참여 후, 맥주를 몰래 구입해 와 취침시간에 같은 방에 있는 아동을 시켜 맥주 캔을 따게 하고 본인이 다 마신 후, 뒷정리를 잘 하지 못했고 담당자에게 맥주 캔이 발견되면서 사실을 알게 됨.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1 <자기결정>

### 자기결정

#### 자기결정 인권실천사례

##### 실무자의 고민

- 본 시설의 특성상, 성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3명이 같은 방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시설 내 성인의 음주를 허용해야 하는가?
- 술을 구입하고, 마시고 싶어 하는 이00씨의 욕구는 이해하지만 시설이라는 단체생활에서 개인의 욕구와 자기결정 측면의 인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가?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1 <자기결정>

### 자기결정

#### 자기결정 인권실천사례

#####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 이용인의 상황, 능력, 사회규범 등에 의해 자기결정의 한계가 있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용인이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생활일지라도 이용인의 욕구가 최대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분야1 <자기결정>

### 자기결정

#### 자기결정 인권실천사례

#####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 시설내 인권지킴이단에서 논의

- 성인과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시설내 음주 허용시, 아동들에게 비교육적일 수 있고 음주로 인한 성적인 문제와 기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시설내 음주는 금지. 단, 성인이용인의 음주 욕구가 있을 시, 담당자 또는 지원교사가 함께 외출하여 시설 밖에서 적정량의 음주 후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함.

- 성인 이용인들에게 음주와 건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

- 음주와 관련해 시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함.



## 분야2 <정보접근>

### 정보접근

#### 정보접근의 개념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

## 분야2 <정보접근>

### 정보접근

#### 관련조항

정보접근과 관련된 조항을 넣어주세요.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2 <정보접근>

### 정보접근

#### 정보접근 인권실천사례

##### 서비스불평등의 문제



한글을 알지 못하는 구00어르신이 복지관 한글 반을 이용하심. 경제적 활동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대한 홍보를 복지관 게시판에 홍보지 부착방법과 홈페이지 공지함.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에게 복지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00어르신이 일자리 담당자를 찾아옴.  
담당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참여가 힘들다고 함.  
구00어르신은 노인일자리사업 모집에 대한 홍보에 대해 물렸다고 이야기 하며 크게 회를 내심.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2 <정보접근>

### 정보접근

#### 정보접근 인권실천사례

##### 실무자의 고민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 홍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ex -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소수를 위해 담당자가 모집공고 및 홍보에만 일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1:1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2 <정보접근>

### 정보접근

#### 정보접근 인권실천사례

#####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 복지관 회원가입 시 복지관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 사업 홍보 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고려하였을 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정보접근에 따르면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3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의 개념

사생활 보장은 개개인의 사스러운 생활의 내용이 부당하게 공개되는 것, 사적 활동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부터 보호받는 것을 말한다.

## 분야3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 관련조항

##### 세계인권선언제 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사회복지사윤리강령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실천3. 사생활보장

이용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정보와 사생활, 서비스 지원 정도 등이 이용인이 알지 못하는 내, 외부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 분야3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인권실천사례

##### 이용인의 SNS 친구신청

어르신이 만나게 된 노인 돌보미, 사회 복지사, 상담원에게 차례대로 페이스북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수락하지 않자 어르신이 화가 많이 나심. 사적인 것이라 설명을 드려도 페이스북은 세계 어느 누구와도 통하는 것인데 하물며 노인복지관 직원이 노인들과 소통하기를 꺼려한다면 말이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하심.

그럼에도 복지관에서 논의한 결과 사적인 것은 오픈하지 않고, 기관 페이스북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어르신께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나 온전히 납득하시지는 못하였음.

## 분야3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인권실천사례

##### 실무자의 고민

-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저장 시 카카오톡으로 연결되어 카카오톡 스토리 등 사생활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페이스북 자체가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보는데 더 관계가 깊은 이용자인 어르신들을 차단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

- 어르신의 평상시 집착하시는 성향이 부담스러워 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어르신들과는 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 폰과 가까워질 때 모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3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 사생활보장 인권실천사례

#####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사생활에 대해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서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해야 함.

- 홍보로 활용하는 것, 이용자와의 전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과 다르므로, 개인 facebook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관 SNS를 적극 활용하되, 기관 SNS 담당자 또한 지정하여 종사자, 어르신의 facebook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4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의 개념

안전과 편의증진이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분야4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 관련조항

1.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 이용인은 어떠한 물리적 장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
2. 세계인권선언 - 제26조 1항
  - 모든 사람에게에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분야4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인권실천사례

##### 보호자의 자녀방임 문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형 : 지적 장애 3급, 동생 : 경계선급 장애), 주 양육자는 어머니로, 경제활동(밤-새벽 일)으로 인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인근 지역에 조모와 삼촌(지적 장애 3급)이 거주하고 있으나 형제 양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과 위험에 노출이 되기 쉬운 상황임.(저녁 시간 대에 돌아다니거나 집의 창문 등이 열려있기도 함) 타 기관의 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이용을 하지 못함. 지역사회기관(학교,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어머니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분야4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인권실천사례

##### 실무자의 고민

- 형제의 어머니와 상담 시 대상자들의 양육에 힘쓰겠다고 하였으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상담 전과 똑같이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위와 같이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육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분야4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 안전과 편의증진 인권실천사례

##### 인권기반 사회복지실천

- 형제 어머니의 경제활동 시간대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활도우미 파견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식사 및 위생관리를 지도)
- 생활도우미 파견 사업 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에게도 학교생활 등과 관련하여 소식을 안내하여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위의 활동 등으로 대상자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및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음.

2013-11-21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더하기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 분임 토의

- || 자기결정
- || 정보접근
- || 사생활보장
- || 안전과 편의증진



# 1. 자기결정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분야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결정 <input type="checkbox"/> 사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 <input type="checkbox"/>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용인의 술 구입관련 사례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인 이00씨(40세 남자)는 타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2년 10월, 본인의 요구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 전원 옴.</li> <li>-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으며 양팔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워 많은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손대신 발가락에 펜을 끼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는 발로 글씨를 써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함.</li> <li>- 식사를 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보다 스스로 식사하기를 원하여 입으로 숟가락을 물고 밥과 반찬을 떠놓은 후, 섭취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함.</li> </ul> <p>지체장애로 인해 신체활동은 불편하지만 모든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며 본인의 의사와 욕구 및 불만이 있을 때 강하게 표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00씨는 간식구입에 대한 욕구가 강해 매주 1~2회 정도 담당교사와 동행하여 마트에서 별도로 개인 간식을 구입하고 있음. 이00씨는 마트에 갈 때 담당교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나가고 싶어 하며 술도 구입하고 싶어 함. 그러나 시설에서 동네마트까지도 보로 왕복 30분 정도 되는 거리이고,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양팔로 물건을 구입해서 들고 오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담당교사가 항상 동행하고 있음.</li> <li>- 그런데 몇 달 전, 외부기관 활동에 참여한 후, 맥주를 몰래 구입해 취침 시간에 같은 방을 사용하는 아동을 시켜 맥주 캔을 따게 하고 본인이 다 마신 후, 뒷정리를 하지 못해 담당교사가 맥주 캔을 발견하게 됨.</li> </ul>
실무자 고민	본 시설의 특성상, 성인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3명이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00씨 혼자만 맥주를 사다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술을 마실 때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술을 구입하여 마시고 싶어 하는 이00씨의 욕구는 이해하지만 시설이라는 단체생활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자기결정 측면에서의 인권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 해주어야 하는지?
실제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의 인권지킴이단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성인이용인의 술 구입 및 시설 내 음주와 관련된 내용을 토의함.</li> <li>-성인과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 내에서는 음주를 허용할 경우 아동 이용인들에게 비교육적일 수 있고 음주로 인한 성문제와 기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시설 내에서의 음주는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함.</li> </ul> <p>단, 성인이용인의 음주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는, 담당교사 또는 지원교사와 함께 외출하여 시설 밖에서 적정량의 술을 마시고 시설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함.</p>

	<p>-성인 이용인들에게 음주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p> <p>-음주와 관련하여 시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함.</p>
<p>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p>	<p>-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p> <p>- 이용인의 욕구가 최대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기결정권과 의사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p>
<p>관련 조항</p>	<p><b>1.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b></p> <p>- 1조. 자기결정</p> <p>이용인은 욕구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용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p> <p><b>2. 세계인권선언</b></p> <p>- 제29조</p> <p>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이 오로지 자유롭고도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의무가 있다.</p> <p>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을 따름이다.</p> <p><b>3.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b></p> <p>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한다.</p> <p><b>4. 헌법</b></p> <p>- 제10조</p> <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p>

##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분야 : ■ 자기결정 □ 사생활보장 □ 정보접근 □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p>청소년의 임신, 출산과정에 대해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p>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김00 청소년(여, 19세)은 2012년 가을 당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김00의 임신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인과 뱃속아이의 아빠. 그리고 같은 단지의 친한 동생 박00군뿐이었음. 김00아이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지역의 같은 단지의 다른 여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 실질적으로 김00은 혼자 생활하여 아버지에게 임신사실을 숨기고 지낼 수 있었으며 김00의 남자친구는 임신사실을 알자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함.</li> <li>- 임신5개월 경 박00군은 김00이 너무 걱정되어 평소 굉장히 잘 지내던 단지 내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민을 나눔. 이로 인해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박00군은 김00양에게 복지관에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방안을 찾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누군가에게 알리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며 실제로 한 두 차례 자살기도를 하였기에 무리하게 접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li> <li>- 결국 가족들 아무도 모른 채 혼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후 사실을 안 아버지와 협의하여 입양기관에 의뢰하여 입양을 보낸 상황 임.</li> </ul>
실무자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과정에 있어 주변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이름아래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 바람직한가?</li> <li>- 인권존중의 대상은 김00인가? 뱃속의 아이인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책은 무엇인가?</li> <li>-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청소년이 실수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을 경우, 이로 인한 낙태, 출산, 입양 등의 선택들 또한 자기결정권 이라는 이름아래 보장받아야 하는가?</li> <li>- 사회복지사로서 자기결정권 및 비밀보장의 원칙을 위하여 위의 상황을 접하면서도 청소년의 결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인가?</li> </ul>
실제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기간 중 박00군을 통하여 상황확인(건강, 일상생활 등) 및 정보제공 (인근 미혼모시설, 건강관리, 입양절차, 출생신고 및 서류절차 등)</li> <li>- 출산 후 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안부 및 유선연락을 통한 관계 유지</li> <li>- 출산선물 제공 (식료품 및 음료 등) - 박00군편에 전달</li> </ul>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관련 조항	

## 2. 정보접근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분야 : <input type="checkbox"/> 자기결정 <input type="checkbox"/> 사생활보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접근 <input type="checkbox"/>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프로그램 홍보 및 서비스 불평등에 대한 사례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OO(남,72세) 어르신은 과거 농사를 지으셨으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어서, 배움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시다 자녀의 권유로 70세가 넘은 나이에 복지관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배움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고 계셨다. 하지만 자녀들의 형편도 그렇고 본인 생활도 넉넉하지 않아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강한 상황이다.</li> <li>- 지자체 예산을 받아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반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평소 문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참여에 대한 공고가 나면 일주일 안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다.</li> <li>-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공고를 홈페이지(시청·복지관), 게시판, 프로그램실, 휴게실등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지를 부착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참여를 독려하는 구두 홍보를 실시하였다.</li> <li>-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고 1주일만에 선착순 110명 모집이 완료되어, 모집기간 완료 이후에 오디션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선별하여 선정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부착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까지 실시하였다.</li> <li>-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고 2달 이후에 구OO 어르신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를 찾아와 본인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음. 담당자는 현재 노인일자리 모집기간도 끝났고 모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중도 포기자가 생기지 않으면 참여가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였다.</li> <li>- 구OO 어르신은 매일 복지관을 다녔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화를 내심.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는 모집공고에 대한 문서자료(홍보지 및 홈페이지등)를 보여드리면서 모집에 대한 기회를 특정어르신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평등하게 드렸다고 이야기 하였다.</li> </ul>
실무자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1:1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li> <li>- 홍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ex -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수를 위해 담당자가 모집공고 및 홍보에만 일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1:1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li> </ul>

<p>실제 대처내용</p>	<p>- 대처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파악 후 노인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시 사업에 참여 시킬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p> <p>- 대처내용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상 활동에 대한 간략한 내용 작성 및 업무일지를 작성 하셔야 되는데 구OO 어르신은 한글 읽기와 쓰기가 능숙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p>
<p>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p>	<p>- 복지관 회원가입 시 복지관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p> <p>- 사업 홍보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고려하였을 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정보접근에 따르면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p>
<p>관련 조항</p>	<p>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p> <p>- 실천 2. 정보접근권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 또한, 인권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등 관련 자료를 기관에 소장하고, 이용인에게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인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p>

### 3. 사생활보장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분야 : <input type="checkbox"/> 자기결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 <input type="checkbox"/>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이용자와 종사자간의 SNS상의 소통문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 노인돌보미가 가정방문하고 있는 양○○(남,70대) 독거어르신이 노인돌보미에게 SNS신청을 함.</li> <li>- 수락, 나중에 하기 등 체크하지 않음</li> <li>- 담당 사회복지사에게도 face book 신청 - 나중에 하기 체크함</li> <li>- 어르신이 화가 나서서 노인돌보미의 방문거부,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자조모임도 오시지 않음.</li> <li>- 사회복지사가 어르신께 SNS는 사적인 공간이어서 수락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으나, 너무 화가 많이 나신 상황으로 상담가에게 연계함.</li> <li>- 상담가와 장시간 상담을 통해 감정이 추슬러졌으나, 상담가에게 다시 face book 요청하심</li> <li>- 일관된 원칙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았고, 어르신은 더욱 화가 나시고, 복지관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기관장 및 시장, 국회의원 등에게 인터넷 민원을 하심.</li> <li>- SNS로 벌어지는 다양한 세계의 동태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고, 어르신을 모신다고 하는 노인복지관의 직원이 형식적으로만 만남을 갖고, 어르신과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심.</li> </ul>
실무자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이 다른 대외관계는 거의 없으시고, 집에서만 생활하심. 자조모임 2회 참여하셨는데 그곳에서의 반응이나 대화에서 집착이 강한 성향이시고,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매우 부담스러웠기도 함.</li> <li>(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안에서의 관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하심)</li> <li>그렇다면, 정서적인 관계 속에서 부담스러운 어르신과는 수락을 안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어르신(예, 리더어르신들)과는 할 수 있는가?</li> <li>-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톡으로 연결되어 카카오톡에서나 사생활이 어느정도 노출이 되어 있고, 페이스북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도 보는데, 평상시 관계가 더 깊은 이용자인 어르신들을 차단하는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함.</li> </ul>
실제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안에서 회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하였음.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사적인 공간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르신의 성향이나 관계와 상관없이 개인 face book이 아닌 기관 face book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li> </ul>

	<p>- 어르신과는 다시 기관장 및 관련자들의 상담을 통해 감정을 추슬러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face book은 오픈할 수 없으며 기관 face book을 이용하는 걸로 말씀드렸으나, 결론만 받아들이셨고 노인돌보미의 방문은 원치 않으셨음.</p>
<p>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p>	<p>-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사생활에 대해 존중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므로 서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해야 함.</p> <p>- 외부에서의 교육이나 흐름은 사회복지계에서도 SNS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있고, 어르신들도 빠른 정보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더 확대될 사안임.</p> <p>- 홍보로 활용하는 것, 이용자와의 전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과 다르므로, 개인 face book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기관 SNS를 적극 활용하되, 기관 SNS 담당자 또한 지정하여 종사자, 어르신의 face book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관련 조항</p>	<p><b>세계인권선언 제 12조</b>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p> <p><b>헌법 제17조</b>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b>사회복지사 윤리강령</b>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p> <p><b>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b> 실천 3. 사생활보장 이용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지켜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정보와 사생활, 서비스 지원 정도 등이 이용인이 알지 못하는 내외부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p>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

분야 : 자기결정 사생활보장 정보접근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사례관리를 위한 발굴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공유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을 통한 사례관리 진행 가정 중 매년 법정 한부모 또는 기초수급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특정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li> <li>- 하지만, 이의 경우 특정사업군에 대한 특정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 진행 가구에 대한 기초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리스트화하여 해당 사례관리 기관에 공유하여 진행됨.</li> <li>- 이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가족에 대한 동의절차를 한부모, 수급, 차상위 가정 등 특정 저소득 가구 보호와 관련 신청 절차에서 복지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의뢰 및 공유에 대한 동의절차를 기본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음.</li> <li>- 하지만, 이 고지사항은 저소득가구가 정부의 보호를 받기 위한 신청과정에서 일부의 의무적인 동의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음.</li> <li>- 이렇게 저소득 가구 보호과정 상에서의 개인정보 공유에 따른 동의를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한 미흡함이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한 특정 가구의 사례관리 리스트가 사례관리 기관으로 공유되어 개별접촉 하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마련임.</li> <li>- 예를 들어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그런 안내 받은 적 없다.’ ‘불쾌하다.’ 등의 의사를 표현하며, 가구의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함.</li> </ul>
실무자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저소득 가구의 보호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공유가 당연시 되는 모순점이 발현되어진다고 볼 수 있음.</li> <li>- 이 부분에서의 특정 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단계에서 공공이 아닌 민간 사례관리 기관에서 가구별 리스트를 보고,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개인정보 공유 문제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li> </ul>
실제 대처내용	-이러한 특정사례관리 사업의 진행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사전 전화연락을 통한 사업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1차적인 만남의 동의를 구한 뒤, 대면상담에서의 충분한 안내와 동의를 받고, 사례관리 진행에 동의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강화되고 있음.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관련 조항	

## 4. 안전과 편의증진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분야 : <input type="checkbox"/> 자기결정 <input type="checkbox"/> 사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정보접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보호자의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자녀돌봄 문제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00군 형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은 지적장애 3급이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동생은 경계선급 장애이지만 장애판정을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황임.</li> <li>- 가족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외에 조모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아버지의 직업은 일용직이며, 가정 일에 소홀히 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음. 어머니가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통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음.</li> <li>- 어머니는 두 형제의 치료 및 양육, 교육활동 등에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새벽과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보였음.(어머니는 섬유관련 활동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고 있음.)</li> <li>-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와 삼촌(지적장애 3급)은 개인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어 두 형제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li> <li>- 두 형제는 원만한 가정환경이 형성되지 않아 지각 및 결석, 끼니를 거르거나 12시가 넘어 잠을 자는 등 바르지 못한 일상생활 활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학교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등 사고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 학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음.</li> <li>- 타 기관에서 야간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입을 하였으나, 사춘기 시기이고 체격이 큰 대상자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함.</li> <li>- 대상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양육의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자녀양육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음. 그러나 경제활동의 참여로 인해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음.</li> </ul>
실무자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와 상담 시 대상자들의 양육에 힘쓰겠다고 하였으나,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상담 전과 똑같이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위와 같이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어머니의 지속적인 설득과 교육만 진행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li> <li>- 학교와 복지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양육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li> </ul>
실제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 시간대를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생활도우미 파견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등교 시간 및 방과 후 시간에 맞춰 활동을 하되, 식사 및 위생관리 등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도우미 파견 사업 외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에게도 학교생활 등과 관련한 소식을 안내하여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li>- 위의 활동 등으로 대상자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및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에 기반을 두어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아 생활을 해야 하지만, 가정환경이 원만하게 조성되지 않아 대상자들을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가족 중에 대상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환경으로서는 타인의 협조를 통해 교육 및 양육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li>- 빠른 시일 내에 母가 양육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母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까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생활도우미 파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조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인권실천 네트워크 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인은 어떠한 물리적 장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받아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li> </ul> </li> <li>2. 세계인권선언 - 제26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li> </ul> </li> </ol>

##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분야 : 자기결정 사생활보장 정보접근 안전과 편의증진

제 목	사례관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父子가정으로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지속되는 수입원의 불안정에서 오는 경제적 악순환과 그에 따른 고충 호소,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말다툼 등 어려움이 발현되는 가정임.</li> <li>- 담당 사례관리기관과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체계를 통한 가정의 경제적 악순환 상황에서의 자원이 연계되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나, 이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만취 상태로 담당사례관리자 소속기관으로 전화를 걸어 서비스지원 요청이 빈번함.</li> <li>- 전화상담과정에서 만취한 목소리로 “난,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야 하니 집으로 오라, 나를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면 도대체 누굴 도와주느냐?” 등의 이야기를 반복함.</li> <li>- 전화상담 과정에서 본인을 돕겠다 등의 말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 씨× 맨날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쁘냐?”, “내가 오라면 당장 와야지 왜 안 오냐?”, “내가 복지관과 구청, 주민센터, 시청에 찾아가서 한번 다 뒤집어 엮어봐야 알겠냐?”, “지금 당장 가서 다 뒤집고,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욕설, 폭언으로 불안을 조장함. 전화종료 후, 다시 전화를 하여 복지관에 전화한 이야기를 아버지의 누나에게 알리고, 누나한테 복지관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길 들으면, “당신의 목을 ××××. 복지관가서 다 뒤집어 버리겠다.” 등의 이야기로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협박 함.</li> </ul>
실무자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의 경제적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자원연계가 어려운 상황을 알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상담의 과정을 진행하는 중, 만취상태에서 담당사례관리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의 사례관리자로서 계속적으로 참고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됨.</li> <li>- 사례관리자의 인권 또한 존중받고, 안전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이 가정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됨.</li> </ul>
실제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취 상태에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 전체를 듣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함. 아버지가 만취했을 때 통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당사례관리자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눔.</li> <li>- 아버지는 그럴 경우, 만취상태에서는 전화 상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 진행하였었음.</li> <li>- 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만취상황에서 협의된 부분을 시도하였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중단하거나, 화제 전환시 고집, 욕설, 협박이 이어져 대처 어려움</li> </ul>
인권기반 사회복지 실천	
관련 조항	



제2회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 열린워크숍

# 더불어 나누기

사회복지 인권실천

## 참고자료

- 1) 세계인권선언문
-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3)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 세계인권선언문

##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1 조

1.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1.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1.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 15 조

1.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1.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

- 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 2.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3.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7 조

- 1.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 2.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 제 20 조

- 1.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 21 조

- 1.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 3.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 제 23 조

- 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 2.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4.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 제 25 조

- 1.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1.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 27 조

1.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 29 조

1.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 전문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그리고 인권을 위해 헌신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열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실질적인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솔선한다.

우리의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그들과 직접 일하거나 그들의 상태를 변화,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제도 개선에 관련된 제반 활동에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성적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개인이 부당

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며,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강령

### I.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의무와 권리

#### 1. 전문직으로서의 책임

-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사회복지사는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성적 취향,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선호사항이나 개인적 특징, 조건, 지위를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3)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으로 취한 언행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완수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이 갖는 고도의 성실성과 공정성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 5) 사회복지사는 인가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실천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 6)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명의 수행에 있어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7)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의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직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2)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실천지식을 규명하고 개발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 할 책임이 있다.
-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연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얻은 정보는 비밀 보장의 원칙 하에 다루어져야 하고, 연구수행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불편, 고민, 위해, 위험, 박탈 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의 과업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6)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시하는 재교육 및 보수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1) 수수료 책정시 사회복지사는 제공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비추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한다.

2) 사회복지사는 업무적, 비업무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II.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 1.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최대한의 전문적 기술과 능력 및 헌신하는 마음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함으로써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그의 입장과 이익을 최대한 대변한다.

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를 존중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대해 최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5)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본질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6) 사회복지사는 문서,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제약과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정보를 공개한다.

7)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을 보고자 할 때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때 제3자의 비밀보장에 주의를 기울인다.

8)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성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0)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한다.

### 2.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전문적 책임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 자신의 클라이

언트와 동등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Ⅲ. 동료와의 관계

#### 1. 동료

-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하지 않는다.
-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이익과 관심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한다.
-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반 규정이나 강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한다.
- 4) 전문적인 판단과 수행을 방해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의 저해를 방지한다.
- 5)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규정이나 강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한다.
- 6) 동료 사회복지사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의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2. 수퍼바이저

- 1) 수퍼바이저는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수퍼바이저는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를 공유한다.
- 3) 사회복지사는 수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에 조력한다.
- 4)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성적,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Ⅳ.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

1. 사회복지사는 인권의 존중과 인간의 평등을 위한 일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국가사회정책의 형성, 개발,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법규제정을 요구하고 옹호한다.
4.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V. 사회복지사와 기관과의 관계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한다.
2.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목표를 위해서만 기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3.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제반 규정과 강령을 통해 공식적 절차로 거절한다.
4.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복지의 성장발전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에 힘쓴다.

## VI.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소임에 맞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윤리 실천의 제고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에 따른 규정을 두고 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III. 사회복지사 선서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다음과 같이 하게 한다.

###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믿으며 사회정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사회체계들과 다양한 수준에서 함께 일하며,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발전에 기여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익 전문가로 일생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명예를 걸고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 사회복지인권실천네트워크 선언문

우리 사회는 누구나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요구한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받아들여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리며, 이용인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정의하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권에 기반을 둔 관점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실천 1. 자기결정** | 이용인은 욕구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양한 체계를 통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 이용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천한다.

**실천 2. 정보접근** | 이용인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입장에서 실천한다. 또한, 인권 관련 국내외 연구문헌 등 관련 자료를 기관에 소장하고, 이용인에게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인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실천 3. 사생활 보장** | 이용인의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지켜야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상정보와 사생활, 서비스 지원 정도 등이 이용인이 알지 못하는 내·외부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천한다.

**실천 4. 안전과 편의증진** | 이용인은 기관 이용 시 어떠한 물리적 장벽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받아 안전과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

**실천 5. 인권교육** | 이용인과 실천가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국내외 사회복지 인권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한다. 이를 통해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복지서비스 원칙을 채택하여 실천한다.

**실천 6. 인권계획** |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인권실천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인권의 가치를 담은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실천한다.

**실천 7. 인권위원회** | 인권적 사회복지실천을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인과 실천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실천한다.

**실천 8. 정책참여** |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이용인을 옹호하며 인권에 문제가 있는 사회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실천 9. 인권모델** |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인권실천의 모델로써 견인을 담당하고 허브기능의 역할을 실천한다.

**실천 10. 인권연대** | 사회복지 인권실천 네트워크 소속 기관은 위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실천하고, 인권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사회복지 실천이 인권의 관점으로 재구성되기 위한 노력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